

2010

태권도 경기규칙(해설)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2010

태권도 경기규칙(해설)

제정 : 1973. 05. 28
개정 : 1977. 10. 01
개정 : 1982. 02. 23
개정 : 1983. 10. 19
개정 : 1986. 06. 01
개정 : 1989. 10. 07
개정 : 1991. 10. 28
개정 : 1993. 08. 17
개정 : 1997. 11. 18 (시행 : 1998. 7. 1)
개정 : 2001. 10. 31 (시행 : 2002. 7. 1)
개정 : 2003. 02. 14
개정 : 2003. 11. 25
개정 : 2005. 11. 07
개정 : 2008. 01. 15
개정 : 2009. 01. 14
개정 : 2010. 01. 19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본 회’ 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본 회 승인대회 포함)의 경기를 통일된 규칙 아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 회와 각급 산하 지부와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대회(본 회 승인대회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 (경기장)

경기장은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 있는 매트 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은 일정 높이의 경기대로 조정 설치 할 수 있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30°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형태 : 경기장은 팔각경기장, 사각 경기장, 또는 원형 경기장으로 할 수 있다

가. 팔각 경기장

면과 면간의 거리가 8m인 팔각형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 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팔방 1m 넓이의 외부 바닥면을 안전지역이라 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 일 때는 5cm 폭의 색선으로 한계선을 구분한다.

나. 사각 경기장

8m×8m 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지역 끝선 인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m 외부 바닥면을 안전지역이라 하고 경기지역과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 폭의 색선으로 한계선을 구분한다.

다. 원형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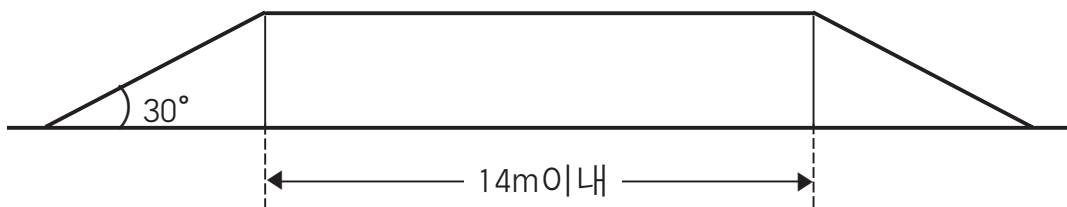
지름 8m의 원형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 지역 끝선인 한계 선으로부터 사방 1m 폭의 외부 바닥면을 안전지역이라 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 폭의 색선으로 한계선을 구분한다.

1. 위치표시

- 가. 주심 위치 :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 나. 부심 위치 : 부심은 한계선으로부터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 다. 기록원 위치 : 경기장 전방 한계선 위치로부터 1m 이상 후방에 정한다.
- 라. 선수 위치 : 경기장 중심점에서 좌, 우로 각 1m 떨어진 곳에 우측을 청, 좌측을 홍 선수 위치로 한다.
- 마. 코치 위치 : 청 및 홍 선수 쪽 한계선 밖으로 1m 떨어진 곳으로 한다.
- 바. 검사대 위치 : 검사대는 경기장 입구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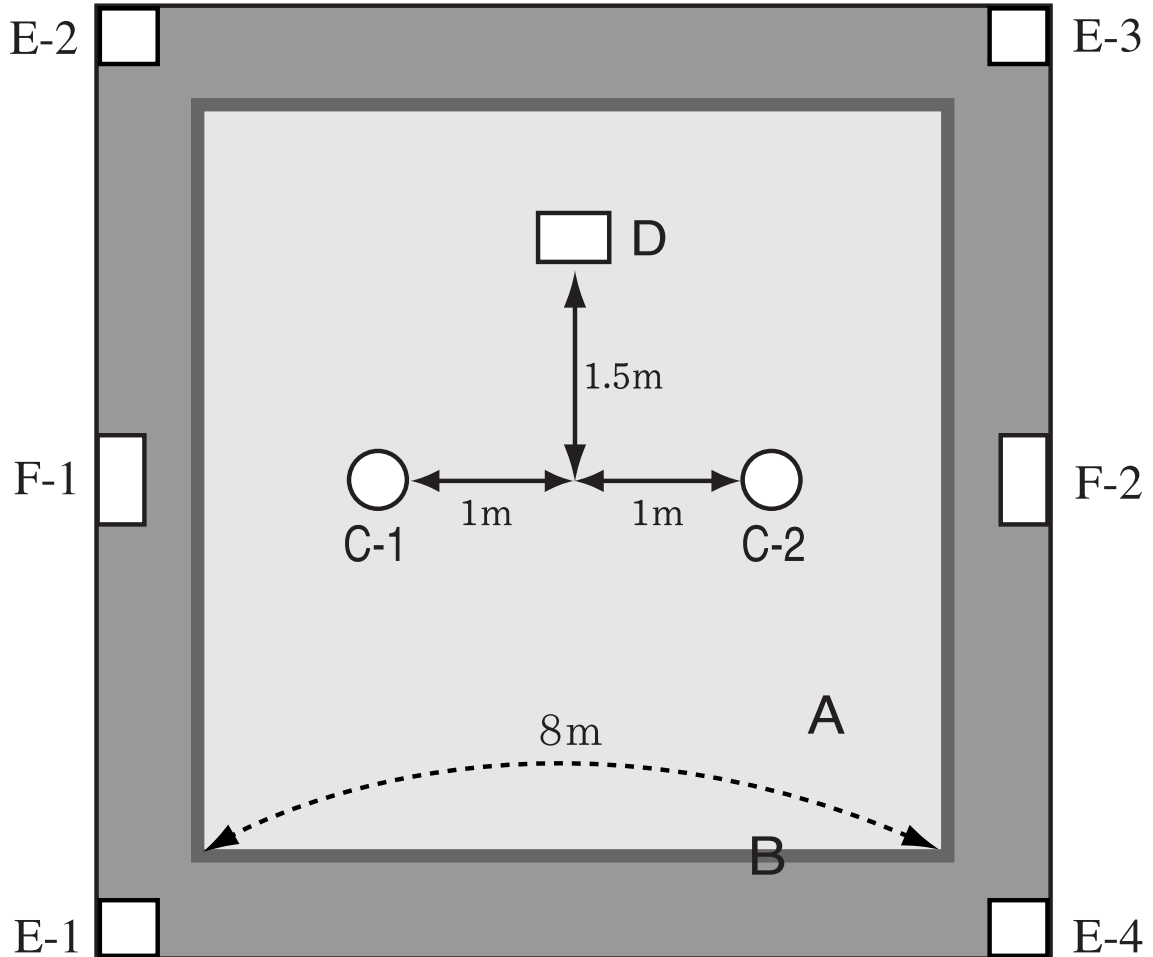
주

- ① 탄력성 있는 매트: 매트와 탄력성의 강도와 재질, 색상 등 적합성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경기대: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 할 수 있다.



- ③ 검사대: 검사대에서는 선수가 착용한 도복 및 모든 장비가 본 협회 공인품인지, 또 그 규격이 선수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한다. 부적합한 착용물이 있을 시에는 출전이 제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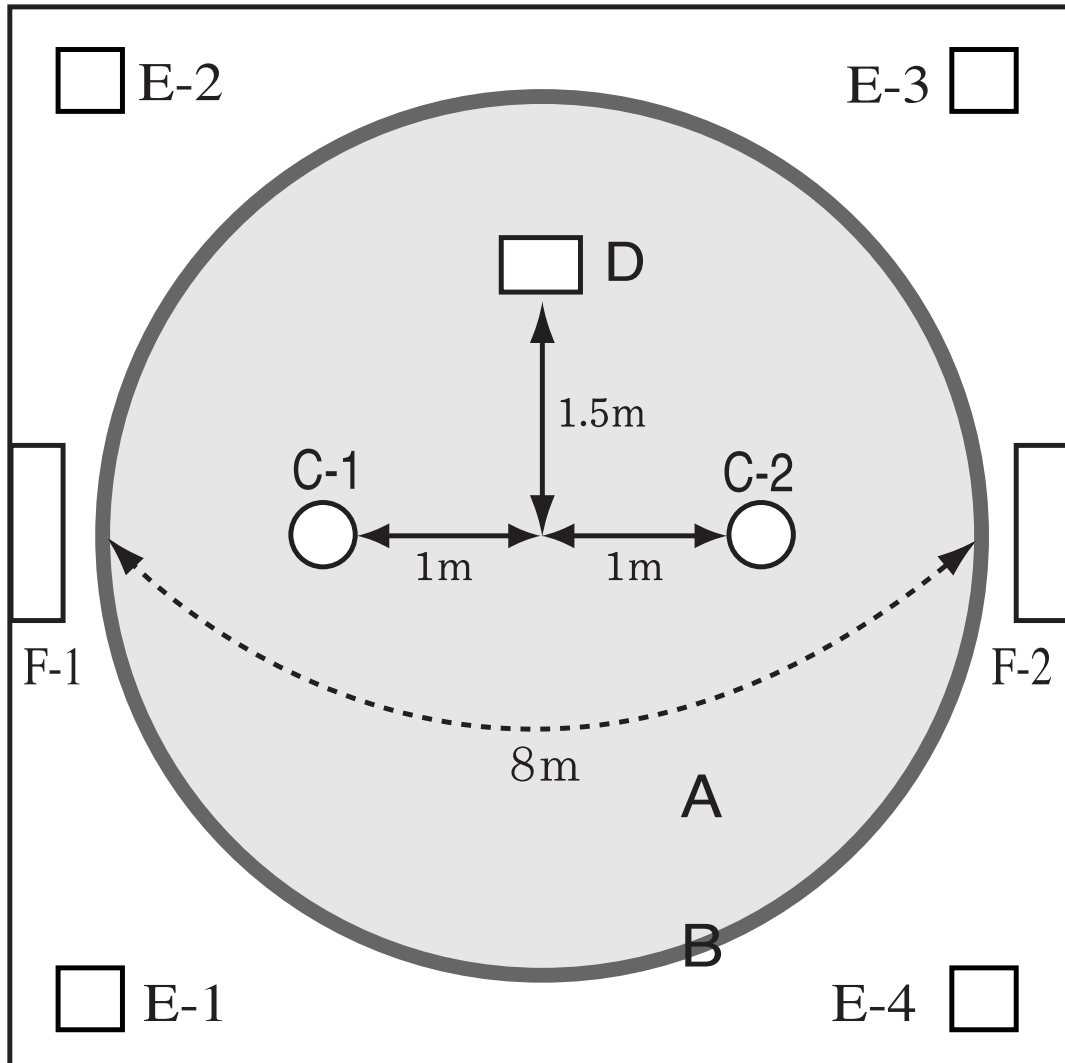
(사각 경기장)



A : 경기지역
B : 한계선
C-1 : 선수(청)
C-2 : 선수(홍)
D : 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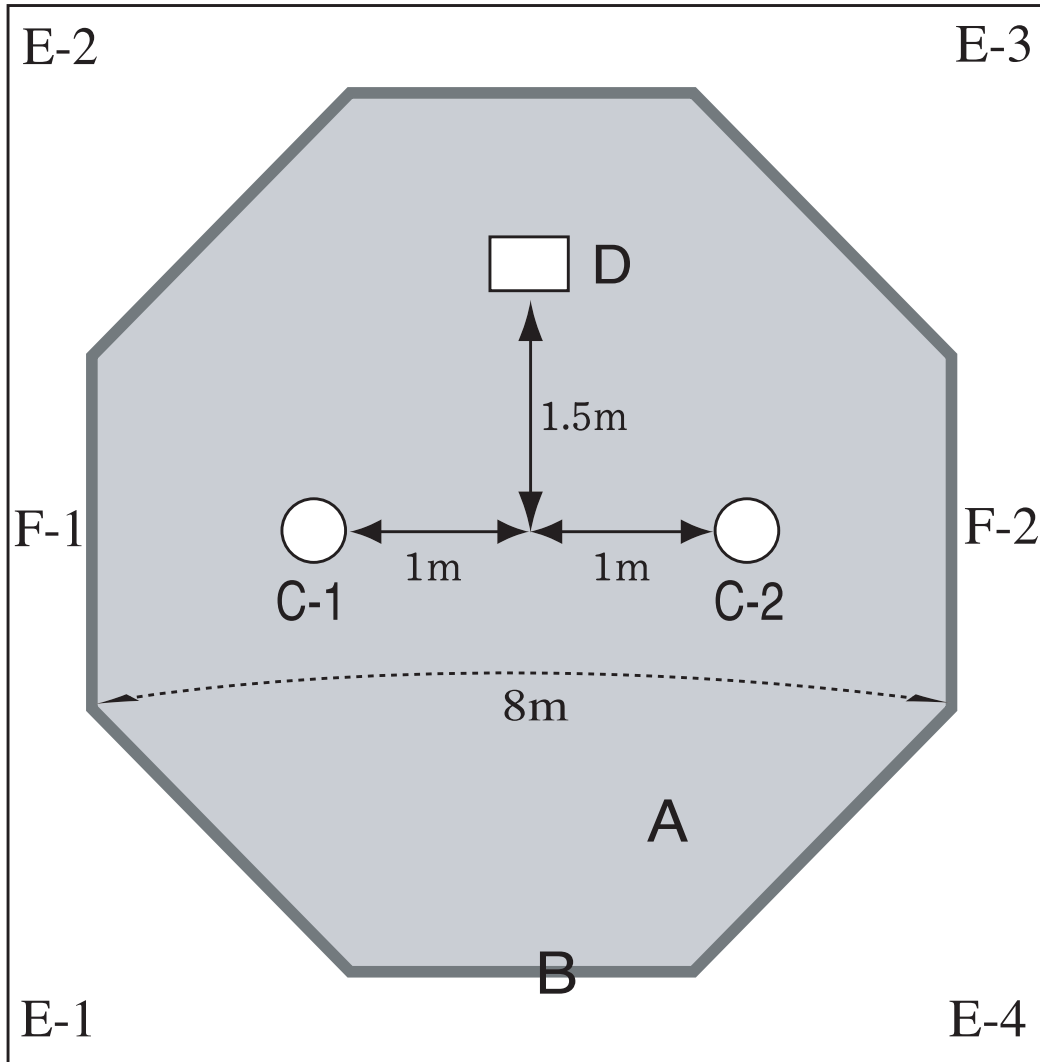
E-1 : 1부심
E-2 : 2부심
E-3 : 3부심
E-4 : 4부심
F-1 : 청 선수코치
F-2 : 홍 선수코치

(원형 경기장)



- | | | | |
|-----|---------|-----|----------|
| A | : 경기지역 | E-1 | : 1부심 |
| B | : 한계선 | E-2 | : 2부심 |
| C-1 | : 선수(청) | E-3 | : 3부심 |
| C-2 | : 선수(홍) | E-4 | : 4부심 |
| D | : 주심 | F-1 | : 청 선수코치 |
| | | F-2 | : 홍 선수코치 |

(팔각 경기장)



- | | | | |
|-----|---------|-----|----------|
| A | : 경기지역 | E-1 | : 1부심 |
| B | : 한계선 | E-2 | : 2부심 |
| C-1 | : 선수(청) | E-3 | : 3부심 |
| C-2 | : 선수(홍) | E-4 | : 4부심 |
| D | : 주심 | F-1 | : 청 선수코치 |
| | | F-2 | : 홍 선수코치 |

제4조 (선수 및 지도자)

① 선수

1. 자격

- 가.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로서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나. 경기 참가에 문제가 되는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 다. 위 가, 나의 해당자로서 부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청소년올림픽,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및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선수자격 요건은 각 대회요강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 1)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2) 중등부 : 중학교 재학 중인 자
 - 3) 고등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4) 대학부 :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5) 일반부 : 만18세 이상으로 일반부로 등록한 자.

2. 복장

- 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경기에 임하는 남·여 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구, 살보대, 팔다리보호대 및 손·발등 보호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여야 하며, 살보대,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며 몸통보호구 외 모든 보호구는 각 선수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보호구 및 보호대 미착용시 출전을 금지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조정 할 수 있다.

3. 의무사항

- 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 나. 협회는 필요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며 차위자가 그 등위를 승계하고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무효 조치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 다. 몸을 청결히 하고 공인된 경기용구 이외의 물체를 지녀서는 안된다.

- 라. 대전 순서를 확인하여 대기하고 호명시에는 경기 용구를 착용하고 대전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 마. 경기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협회 및 경기 주최·주관 단체 또는 상대선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단,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임원 (감독·코치)

1. 자격

- 가. 사범자격증 소지자
- 나. 당해연도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
- 다. 심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 임원(감독·코치) 등록을 필한 자
- 라. 사범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학교 감독교사는 해당연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소속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임원등록을 할 수 있다.

2. 복장

- 가. 경기에 임하는 임원(감독·코치)은 협회가 발급한 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나. 임원(감독·코치)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 이거나 심판원의 복장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3. 의무 사항

- 가. 임원(감독·코치)은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 나. 임원(감독·코치)은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임원은 소속팀 외 선수의 경기에 코치로서 임할 수 없다.
- 라.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지역 내에 출입할 수 없다.

지침

- ① 모든 경기용품은 협회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 ②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경우는 차 하위자가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 ③ 협회는 선수가 경기대회 참가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코치는 경기 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자기측 선수가 곤경에 빠졌을 때는 기권을 시킬 수 있다.
- ⑤ 치아보정기 (보철 등) 착용 선수는 각종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에 대한 본인 책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체 급

- ① 남자, 여자부로 구분한다.
- ②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단위: kg)
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별 체급	남 자 부		여 자 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남여공용
핀 급	41kg까지	52kg까지	40kg까지	45kg까지	33kg까지
플 라 이 급	41초과 45까지	52초과 56까지	40초과 43까지	45초과 48까지	33초과 35까지
밴 텀 급	45초과 49까지	56초과 60까지	43초과 46까지	48초과 51까지	35초과 37까지
페 더 급	49초과 53까지	60초과 64까지	46초과 49까지	51초과 54까지	37초과 39까지
라 이 트 급	53초과 57까지	64초과 68까지	49초과 52까지	54초과 57까지	39초과 41까지
L-웰터급	57초과 61까지		52초과 55까지		41초과 44까지
웰 터 급	61초과 65까지	68초과 72까지	55초과 58까지	57초과 60까지	44초과 47까지
L-미들급	65초과 69까지	72초과 76까지	58초과 62까지	60초과 64까지	47초과 50까지
미 들 급	69초과 73까지	76초과 80까지	62초과 66까지	64초과 68까지	50초과 53까지
L-헤비급	73초과 77까지	80초과 84까지	66초과 70까지	68초과 72까지	53초과 56까지
헤 비 급	77kg초과	84kg초과	70kg초과	72kg초과	56kg초과

※ 단, 중·고등부는 대회 성격에 따라 학년별부를 초등부는 1/2, 3/4, 5/6 학년부를 둘 수 있다.

나. 대학부, 일반부

남자부(대학·일반부)		여자부(대학·일반부)	
-54kg급	-54kg까지	-46kg급	-46kg까지
-58kg급	54초과 58까지	-49kg급	46초과 49까지
-63kg급	58초과 63까지	-53kg급	49초과 53까지
-68kg급	63초과 68까지	-57kg급	53초과 57까지
-74kg급	68초과 74까지	-62kg급	57초과 62까지
-80kg급	74초과 80까지	-67kg급	62초과 67까지

-87kg급	80초과 87까지	-73kg급	67초과 73까지
+87kg급	87kg초과	+73kg급	73kg초과

③ 올림픽경기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 자 부		여 자 부	
-58kg급	-58kg까지	-49kg급	49kg까지
-68kg급	58kg초과 68kg까지	-57kg급	49kg초과 57kg까지
-80kg급	68kg초과 80kg까지	-67kg급	57kg초과 67kg까지
+80kg급	80kg초과	+67kg급	67kg초과

④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 자 부		여 자 부	
-45kg급	45kg까지	-42kg급	42kg까지
-48kg급	45kg초과 48kg까지	-44kg급	42kg초과 44kg까지
-51kg급	48kg초과 51kg까지	-46kg급	44kg초과 46kg까지
-55kg급	51kg초과 55kg까지	-49kg급	46kg초과 49kg까지
-59kg급	55kg초과 59kg까지	-52kg급	49kg초과 52kg까지
-63kg급	59kg초과 63kg까지	-55kg급	52kg초과 55kg까지
-68kg급	63kg초과 68kg까지	-59kg급	55kg초과 59kg까지
-73kg급	68kg초과 73kg까지	-63kg급	59kg초과 63kg까지
-78kg급	73kg초과 78kg까지	-68kg급	63kg초과 68kg까지
+78kg급	78kg초과	+68kg급	68kg초과

⑤ 주니어올림픽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 자 부		여 자 부	
-48kg급	48kg까지	-44kg급	44kg까지
-55kg급	48kg초과 55kg까지	-49kg급	44kg초과 49kg까지
-63kg급	55kg초과 63kg까지	-55kg급	49kg초과 55kg까지
-73kg급	63kg초과 73kg까지	-63kg급	55kg초과 63kg까지
+73kg급	73kg초과	+63kg급	63kg초과

해 설

- ① 태권도 경기는 상호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득점을 하며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간의 체중 차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 시켜서 안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조건에서 기술을 겨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급 제도를 규정하였다.
- ② 체급의 구분이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경기의 성구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까지 : -kg이하의 뜻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kg까지는 50.00kg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50.009kg까지 포함된다. 50.01부터 초과로서 실격된다. ② 초과 : 50kg초과란 50.01kg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49.999kg까지는 미달로서 실격이 된다.
----------	--

제6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 ①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개인전 :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
 - 2. 단체전 : 단체간의 대전방식(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 가. 남, 여 체급별 5명제

남 자 부	여 자 부
54kg까지	47kg까지
54kg초과 63kg까지	47kg초과 54kg까지
63kg초과 72kg까지	54kg초과 61kg까지
72kg초과 82kg까지	61kg초과 68kg까지
82kg초과	68kg초과

나. 무제한 5명제

- ②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 토너먼트(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2. 리그전(Round Robin)
 3. 패자부활전(Double Repechage)
- ③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해설

- ① 개인전은 각 체급별, 개인단위로 대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대회규정이 정하는 채점방식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 등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 ② 개인단체전의 종합성적은 메달수(금, 은, 동 순)로 결정되며, 메달 수가 동일할 경우 참가선수 수가 많은 체급의 입상자 순으로 한다. 단 미계체 또는 계체 실격 선수는 참가선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단체전은 단체간 대전의 결과에 따라 단체단위로 승패가 가려지는 방식을 말한다.
- ④ 위와 같은 단체전 대전에서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 전에 한편이 먼저 3승을 하였을 때는 나머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패한 단체팀이 나머지 경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때는 그때까지의 성적에 관계없이 그 단체의 성적을 기권패로 처리한다.

제7조 (경기 시간)

- ① 부별 경기는 2분×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을 1분으로 한다. 단, 동점으로 3회전 종료 시 1분간의 휴식 후, 서든데스 오버타임회전으로서 2분 1회전의 제4회전을 실시한다.
- ② 대회에 따라 5분 단회전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요강 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항 및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 침

- ① 회전간 휴식시간 중 선수는 자기측 코치석에 설치된 의자에서만 쉬도록 허용하며 항상 주심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 ② “갈려” 선언시, 기록원은 경기시간을 정지시켜야 하며, 주심은 “계시” 또는 “시간”을 선언하여 경기중지 상태로 전환하여 경기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한다.

제8조 (추 첨)

- ① 추첨은 대표자 회의에서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 ②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추첨을 담당할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 ③ 추첨 순위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 (계 체)

- ①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셔츠와 하의는 도복 차림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나체로 할 수도 있다.
- ③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 시는 계체 시간 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단, 최초 계체시 1.5kg 미달 또는 초과시에는 추가 계체없이 계체실격 처리한다.
- ④ 당일 계체선수는 계체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선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선수증 미지참자는 미계체로 실격처리 한다.

주

- ① 당일 대전선수 : 본 협회 또는 대회본부가 미리 발표한 대전 일정상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 ② 경기 전날 : 계체시간은 대회본부가 사전에 정한 것을 따르며 이는 대표자회의 시 선수단에 통보되어야 한다.

- ③ 계체 실격 : 각 선수가 대회에 임하여 계체에 실격했을 때는 기본점수의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참가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 ④ 계체는 참가팀의 감독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경기 임원에 의해 실시한다.

제10조 (경기 진행)

① 선수의 호출

경기시간 3분전 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 경기 개시시간 까지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② 신체 및 복장 점검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협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③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1명의 코치와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④ 경기의 시작과 종료

1. 매회전 마다 주심의 “시작”과 “그만” 선언에 따라 시작과 종료 가 된다. 단, 주심의 “그만” 선언 전이라도 전광판의 경기시간 이 종료되면 회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심이 “시작”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기계적 오작동 등으로 인 하여 경기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득점과 반칙사항 등 경 기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단, 경기중 기록위원의 조작 실수나 기계적 오작동으로 인해 경기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발생 한 득점은 주부심 확인을 거쳐 수정 될 수 있다.

⑤ 경기 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 먹을 왼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 보고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4.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5. 선수 퇴장

⑥ 단체전 절차

1. 양 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청, 홍 선수위치로 부터 일렬로 마주 보고 선다.

2. 경기진행은 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4. 경기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제11조 허용기술과 부위

① 허용기술

1. 손기술 : 바른 주먹을 이용한 공격

2. 발기술 : 복사뼈(복숭아뼈)이하의 발부위를 이용한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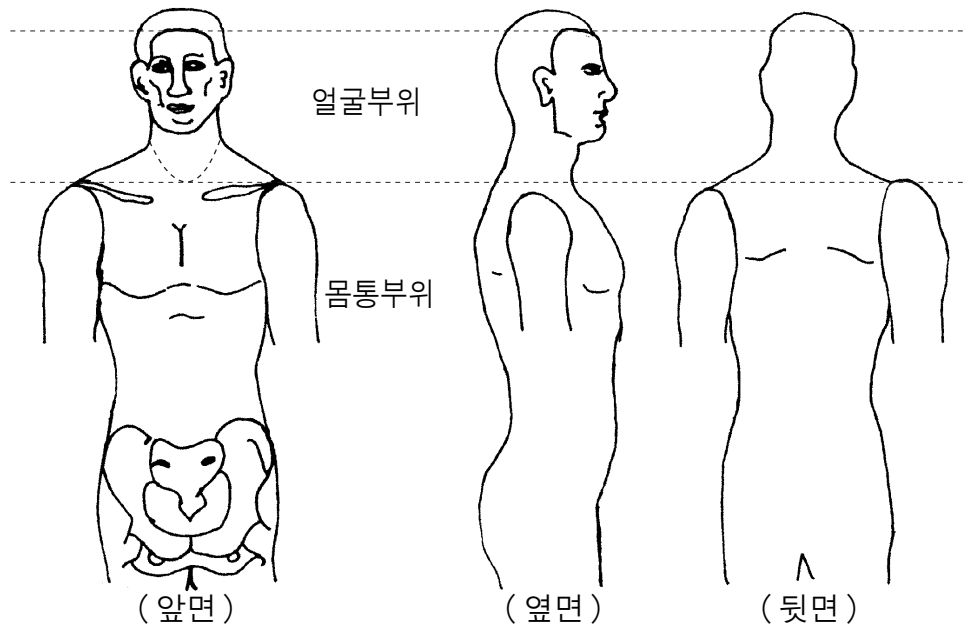
② 허용부위

1. 몸통부위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 단, 척추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2. 얼굴부위 : 머리 전체를 말하며 발기술에 의한 공격만이 허용된다.

주

- ① 손 기술 : 바른 주먹을 이용한 공격. 여기서 바른 주먹이란 바르게 쥔 주먹이란 뜻으로, 바르게 쥔 주먹을 이용하여 몸통부위를 공격(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발 기술 : 복사뼈(복숭아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 복사뼈(복숭아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타격기술은 어떤 기술이라도 정당한 기술로서 복사뼈(복숭아뼈) 이상의 다리 부위, 정강이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③ 몸통부위 : 그림과 같이 쇄골과 장골 사이에서 호구로 보호된 부분을 몸통 허용부위로 한다. 따라서 체급과 체격에 따른 알맞은 크기의 호구의 착용여부가 엄격하게 검사되어야 한다.
- ④ 얼굴부위 : 그림과 같이 쇄골위 부터 머리 전체를 말한다. 단, 쇄골 위쪽 어깨부분은 몸통부위로 한다.



제12조 (득 점)

① 득점부위

1. 일반호구 사용시

- 가. 몸통 : 몸통호구의 청홍색으로 표시된 부위(등부위 제외)
- 나. 얼굴 : 허용부위와 같다.

2.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 사용시

- 가. 몸통 : 몸통호구에 표시된 부위
- 나. 얼굴 : 허용부위와 같다.

② 득점 :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게 그리고 일정강도 이상으로 가격한 타격으로 한다.

③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 1점~2점

- 가. 1점 : 주먹 및 직선공격에 의한 발차기
- 나. 2점 : 회전공격에 의한 발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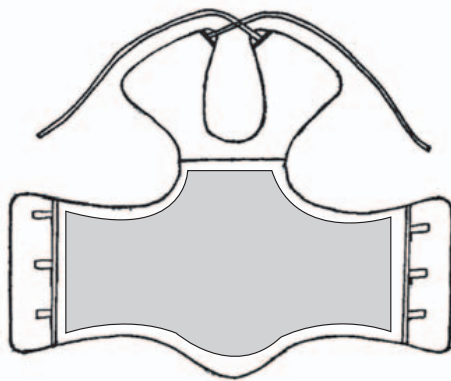
2. 얼굴 : 3점~4점

- 가. 3점 : 직선공격에 의한 발차기
- 나. 4점 : 회전공격에 의한 발차기

3. 몸통부위나 얼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를 하면 추가 1점이 부여된다.

④ 득점은 3회전을 통산하며 단회전 경기는 종합 채점 결과로 한다.

⑤ 득점의 무효 :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하였을 때 주심은 벌칙의 선언과 함께 그 기술의 무효와 득점의 삭제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호구)

제13조 채점과 표출

- ①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 ② 일반호구 사용 시 채점은 채점기나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 ③ 5심제는 3인 이상의 부심이 인정하는 점수를 유효 득점으로 한다.
- ④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 사용 시 채점
 1. 몸통부위의 득점은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에 의해 전광판에 나타난 기준치 이상의 타격값에 따라 부심이 채점한다. 단 기준치 이상의 타격값이 표출되더라도 무효한 기술에 대하여는 부심이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얼굴부위의 득점은 부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채점한다.
 3. 경기 중 발생한 기계적인 오류 및 오작동 또는 정상적 기술동작이 아닌 행위에 의해 야기된 사항은 해당 경기의 심판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4. 기타, 전자호구 사용에 따른 득점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술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금지행위와 벌칙

- ①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 ②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 ③ 경고 2회시 감점 1점, 감점 1회시 상대방에게 1점을 가산한다. 단 계상되지 않은 경고 1회는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경고 사항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2. 넘어지는 행위
 3.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거는 행위
 4. 공격을 하지 않는 행위
 5.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 가.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 나.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 다.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라. 고의적으로 미는 행위
 - 마. 엄살을 부리는 행위 또는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바. 선수나 코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

- ⑤ 감점사항
 - 1. 고의적으로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2.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3. “갈려”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4.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5.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 6.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 ⑥ 주심은 코치가 규칙을 무시하고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 선수의 경우 즉시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 ⑦ 3회의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
- ⑧ 경고와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 ⑨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 사용시, 경기중 선수나 코치가 장비를 고의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해설 및 지침

- ① 본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호 둘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경고 1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대편에게 1점이 가산 된다. 경고 2회에 대한 합산은 그 경고가 같은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다른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또 회전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누적 계산 된다.
- ③ 주심은 선수 또는 코치가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 명령을 선언할 수 있다. 주심은 선수 또는 코치가 태권도 경기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경기규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심판의 경기진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3회의 감점선언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퇴장을 명하고 경기를 종결할 수 있다. 선수가 정상적인 경기운영 의사없이 상대선수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경기에 임하거나 주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범하려는 의사나 행동

을 명백하게 보일 때 또는 지나치게 적대적 감정으로 경기에 임하는 등의 경우에 주심은 퇴장을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주심의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나 코치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대회에 3회 출전을 불허한다.

④ 경고 사항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한 선수의 발이 모두 경기지역을 벗어났을 때 언제나 즉시 갈려 선언 후 경고를 부과해야 하며 양 선수의 발이 모두 경기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양 선수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2. 넘어지는 행위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를 부여한다. 단, 미끄러지거나 혼전 중 불가항력에 의해 넘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대의 반칙행위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는 경고처리하지 않고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만 벌칙을 부여한다.

3.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거는 행위

가. 잡는 행위 : 상대 선수의 신체 또는 도복이나 보호 용구의 일부를 잡는 행위

나. 거는 행위 :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리나 발을 잡거나 팔 또는 어깨 위로 거는 행위, 또는 다리로 상대의 다리를 걸어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

다. 끼는 행위: 상대 선수의 겨드랑이 바깥으로 손이 나가는 행위

1) 상대 선수의 팔 안쪽을 끼는 행위

2) 상대 선수의 팔 바깥쪽을 끼는 행위

4. 선수가 공격하지 않는 행위

가. 주심은 양 선수가 공방없이 소극적인 경기운영을 할 때 경기 촉진을 위해 ‘8초 선언’을 하여야 한다.

나. 선언 후 양선수가 8초 내 공격하지 않을 때는 한계선에 가까운 선수에게는 경고를 선언한다.

5.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가.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을 돌려 피하는 행위로써 이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첫째,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

의 걸여라는 점과 둘째, 심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을 보이면서 피하는 행위 이외 에도 몸을 허리 이하로 숙여서 피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고 웅크려서 피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나.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손 또는 팔이나 팔꿈치 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당한 선수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격당한 경우, 즉 지나치게 숙이거나 주의 없이 몸을 돌리는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접근 상태에서 명백히 의도적으로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버티는 행위를 말한다. 단, 발기술을 발휘하여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이 앞으로 들어오거나 공격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가 맞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부득이 상대를 가격하게 된 경우나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버티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라. 고의적으로 미는 행위

상대 선수의 기술발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격해 온 발을 팔 또는 어깨로 걸어 넘기거나 밀어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 기술발휘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상대를 미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마. 엄살을 부리는 행위 또는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상대가 행한 공격 행위를 반칙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게 할 의도로 지나치게 아픔을 과장하거나 가격된 부위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고통을 표시하거나 또는 경기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아픔을 과장하는 행위 등은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서 처벌한다. 이 경우 주심은 경기 속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를 부여한다. 선수가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경기장 주위를 돌거나 상대와의 공방을 회피하는 행위를 할 때 주심은 즉시 경고를 선언한다.

바. 선수나 코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이란 경기 중에 선수나 코치가

아마추어 경기인, 태권도인으로서 행해서는 안될 언어 또는 태도, 행동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기 중에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부심의 판정이나 경기 진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비난 또는 항의하는 행위, 상대 선수나 코치를 모욕하는 행위, 코치의 정상적인 지도가 아닌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행위, 기타 경기에 불필요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경기 자체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조항은 후항 ⑤) 감점사항 6.과 연관되는 조항으로서 그 행위가 몹시 부당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심하게 행해질 때는 감점 선언을, 부당성이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경고 선언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일지라도 경고 선언 후 재차 범할 때는 감점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경, 중의 판단은 오직 주심의 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항의할 수 없다. 선수 또는 코치가 회전 간 휴식 시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주심은 회전간 일지라도 즉시 벌칙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회전에 기록된다.

⑤ 감점 사항

1. 고의적으로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2. 허리 아래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공격이나 방어 행위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허리 아래 부위를 밟거나 가격하여 위해를 가했을 경우

3.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갈려” 선언 이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쉬울 뿐 아니라 이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갈려” 선언 이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또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 않고 공격하는 척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거나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적 감정으로 행했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감점을 선언한다.

4.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넘어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쉽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발기술의 위력은 강하게 가해지기 마련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또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는 않고 공격하는 척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거나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적 감정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감점 선언을 한다.

5.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주먹 공격에 대해 감점이 주어지며 이는 전적으로 주심의 판단에 따른다.

가. 주먹의 출발점이 어깨선 위일 때

나. 주먹의 공격 방향이 위 쪽을 향할 때

다. 기술 교환 없이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접근 상태에서 얼굴을 타격할 때

6.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④ 경고 사항 - 5.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 바. 항 참조

제15조 (경기결과 판정)

① 케이오승

정당한 공격에 의해 다운되어 “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 의사를 취하지 못할 때 또는 경과시간에 관계 없이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 속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심이 선언하는 승리.

② 주심직권승(RSC)

주심의 판단 또는 의사의 자문에 의하여 한 선수가 경기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계시 이후에도 경기속행이

불가능했을 때 또는 주심의 경기 속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선언하는 승리

- ③ 판정승
득감점을 통산하여 점수가 많은 선수에게 선언되는 승리
- ④ 서든데스 판정승
득감점이 모두 동점일 때 서든데스 회전을 가져 선취득점 또는 감점으로 결정된 승리
- ⑤ 기권승 : 상대방이 경기포기로 인하여 얻는 승리
 - 1. 한 선수가 부상 또는 기타 이유로 혹은 자의로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
 - 2. 회전간 휴식을 한 후 계속 경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 3. 코치가 임의로 자기소속 선수의 열세로 더 이상 경기에 속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장내로 수건을 던졌을 때
- ⑥ 실격승 : 상대선수가 선수자격의 결격 또는 상실했을 때나 계체에 실격함으로써 내려지는 승리
- ⑦ 반칙승 : 상대선수가 감점이 -3점이 되거나 또는 주심이 14조 ⑥항에 의해 반칙패를 선언했을때 얻어지는 승리.
- ⑧ 우세승 : 서든데스회전에서 선득점자가 없을 경우 우세 판정기준에 의하여 선언되는 승리

제16조 (서든데스와 우세 판정)

3회전 종료후 양 선수의 득감점이 모두 동점일 경우는 서든데스 회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

- ① 서든데스 회전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선득점과 동시 경기는 종료된다.
 - 2. 감점 되었을시 경기는 종료된다.
 - 3. 무감점이나 무득점시 4회전(서든데스 회전) 경기 내용에 따라서 심판원 전원이 우세를 판정한다.

② 우세 판정의 기준은 다음의 순으로 한다.

일반호구 시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시
1. 선제공격이 많은 자	1. 기술 발휘 횟수가 많은 자
2. 기술 발휘 횟수	2. 고난도 기술 횟수
3. 고난도 기술 횟수	
4. 경기 매너	

지 침

- ① 일반호구 우세 판정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1. 심판원은 경기에 임할 때 반드시 우세판정표를 지참한다.
 2. 우세 판정을 해야 할 경우 주심은 각 부심에게 “우세기록”이라고 외친다.
 3. 주심의 “우세기록” 선언이 있으면 주부심 전원은 반드시 5초 이내에 기록을 마치고 기록표에 본인의 서명을 한 후 주심에게 제출한다.
 4. 주심은 부심의 우세판정표를 받아 종합기록을 한 후 승패를 선언한다.
 5. 승패선언 후 주심은 우세판정표를 기록원에게 전달한다.
- ② 전자호구(타격강도감지호구) 우세 판정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주심은 판정기록지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제17조 (위험한 상태)

- ① 타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 ②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 ③ 강한 타격으로 인하여 주심이 대전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주

① 위험한 상태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타격이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주심의 계수 판단의 기준

득점부위에 대한 타격에 의한 위험한 상태시 주심은 선수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계수를 시작하여 계수가 끝나면 기록원에게 1점 추가를 지시한다.

제18조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치)

①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갈려”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2. 주심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에게 큰소리로 “하나”, “둘”... “열”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3.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일어나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 후 경기를 계속케 한다.
4. 주심이 “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를 패자(KO)로 한다.
5. 주심이 계수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는 계속한다.
6.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경우 그 중 1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한 계수는 계속한다.
7.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열”을 셀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8.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후 조치

타격으로 인해서 패자(얼굴 및 몸통 KO)가 된 선수는 30일 동안 여하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30일 이후라도 경기 출전코자 할 시는 협회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어야 한다.

주

① 먼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선수 위치를 말한다. 그러나 다운된 선수가 상대선수의 선수위치 주위에 있을 때는 공격 선수를 자기 코치석 앞의 경기장 끝선상에 위치케 한다.

②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계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가 비록 여덟 이전에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까지 세기 전에는 경기를 속행시킬 수 없다. 계수를 여덟까지 하는 것은 주심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강제조항이다.

③ 주심은 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KO)로 한다:

재대전 의사란 선수가 겨루기 자세로 서서 겨누 양주먹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계수 여덟까지 선수가 재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주심은 아홉, 열을 센 후 상대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여덟 이후의 재대전 의사는 아무 효력을 가질수 없다. 또 비록 재대전 의사를 표했음지라도 선수가 대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열까지 센 다음 경기결과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는 계수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선수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몹시 위험하여 응급처치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계수없이 또는 계수중이라도 언제든지 바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한다:

여덟을 셀때까지 주심은 선수의 회복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여덟 이후의 확인은 단순한 점검이다. 짧은 순간에 확인하고 바로 경기의 속행을 명해야 한다.

지침

- ① 경기중 득점부위에 대한 유효한 타격으로 선수가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위험한 상태(다운)으로 간주한다.
 1. 타격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타격이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3. 강한 타격으로 인하여 주심이 대전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 ② 주심의 계수

득점부위에 대한 유효한 타격에 의하여 한 선수가 위험한 상태, 즉 다운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주심은 계수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때 주심은 선수의 상태를 살펴 충격이나 부상의 정도가 경기속행이 불가하거나 중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계수를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명한 후 경기결과(KO)를 선언할 수 있다.
- ③ 주심은 경기진행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타격과 그로인한 위험한 상태 즉, 녹다운 또는 스탠딩다운의 상황에 대해 기민한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주저없이 즉시 “갈려선언” 후 지체없이 계수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④ “여덟”을 세는 과정에서 선수의 회복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여덟” 이후에 확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⑤ “여덟” 이전에 선수가 의식을 회복하고 재대전의사를 표했으며, 주심도 경기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상선수의 치료를 위해 경기속행이 어려울 때는 “계속”을 명하는 즉시 다시 “갈려”를 선언한 후 제19조 경기 중단 상황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 (경기 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주심은 “계시”를 선언하고 치료를 조치할 수 있다.

2. 치료는 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3. 선수가 2분이 경과하여도 선수위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패자로 한다.
4. 2분이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 할 경우, 감점행위에 의한 경우는 부상케한 자를 패자로 한다.
5.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1분이 경과하여도 속행이 불가능 할 경우 부상시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6. 한 선수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종결시키고 응급처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부상이 감점행위에 의한 경우는 가격자를 패자로 하고 금지행위가 아닌 경우는 부상시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주

- ① 부상 또는 응급상태의 발생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그 사태가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등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먼저 선수를 응급 처치 받게 하고, 바로 경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때 승패는:
 - 가. 그 행위가 감점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패자로 한다.
 - 나.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경기 진행중에 일어나 금지행위가 아닌 동작이나 정당한 기술에 의한 것일 때는 경기 불능자를 패자로 한다.
 - 다. 경기진행과 무관한 경기외적 사태로 말미암은 부상 및 응급 상황에서는 양 선수가 그때까지 받은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1회전도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한다.
 2. 부상의 정도가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는 계시 후 2분의 범위 내에서 경기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치료의 허가: 간단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임석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나. 경기속행의 지시: 선수가 경기속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의료진의 자문 후 주심이 한다. 주심은 언제든지 선수에게 경기

-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선수가 이 지시에 즉시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 다. 치료 또는 회복을 기다리는 도중에 계시 후 1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주심은 10초 간격으로 “00초 경과”를 큰소리로 알려야 한다. 2분이 되는 순간까지 선수위치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경기 결과를 선언해야 한다.
- 라.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승패는 위 ①-1.의 방법과 같이 결정한다.
3. 양 선수가 모두 경기불능 상태에 빠져 2분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즉시 종결 상황에 처했을 때의 승패는:
- 가. 한편의 선수가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한다.
- 나. 금지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한 상황일 경우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단, 1회전도 끝나지 않은 경우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하고 대회본부가 정한 시간에 재대전케 한다. 이때에도 경기의 속행이 불가능한 선수가 있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다. 양 선수가 모두 감점행위를 범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반칙패로 선언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된 상태외의 경기 중단 상황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대회본부의 지시를 따른다.
 2. 2회전 종료 이후에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정리한다.
 3. 2회전 종료 이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재대전을 원칙으로 하고 재대전은 1회전부터 한다.

제20조 (심판원)

① 자격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② 임무

1. 주심

가. 경기 진행에 관한 주도권을 갖는다.

나. 경기의 “시작”, “그만”, “갈려”, “계속”, “계시”, “시간” 승

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다. 심판은 경기장 내의 범위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기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야 한다.

2. 부심

가. 규정이 정한 범위의 득점을 채점한다.

나.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다. 우세 판정을 한다.

지침

득점의 합의 및 수정

득점판정에 대하여 부심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주심이 “시간”을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부심에게 의견을 물어 득점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때 부심들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주심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주심의 너다운 판정에 부심이 이의가 있을 경우 주심이 넷을 세기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판정의 책임

가.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다. 단 판독소청 또는 서면소청의 결과에 따라 번복될 수는 있다.

나. 심판은 판정에 대하여 소청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4. 복장

가. 심판원은 본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심판원은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할 수 없다.

제21조 (기록원)

① 경기시간, 정지시간 등을 계측하고 득·감점을 기록, 표출한다.

② 주심의 계산 착오시 득·감점과 승패를 교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심판원 구성)

심판원은 주심 1명과 부심 4명으로 구성한다. 단 대회에 따라 부심을 3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설

심판원의 선발, 자격, 임무, 권한 등의 제반 내용은 본 협회의 심판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경기에 관한 사태는 해당 경기심판원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2. 해당심판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 밖에 경기 이외에 관한 사태는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판독소청을 위해 각 코트별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촬영하여야 한다. 또 즉시 판독을 위한 영상재생(리플레이) 장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청 및 상벌)

- ① 소청은 경기 중 진행되는 영상 판독소청과 경기 종료 후 이루어지는 일반 서면소청으로 구분한다.
 1. 영상 판독소청 : 경기 중 일어나는 득,감점 유무
 2. 일반 서면소청 : 일반 사항
- ② 영상 판독소청
 1. 영상 판독소청은 득점과 감점선언에 한한다.
 2. 경고와 우세판정은 영상판독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영상판독 소청을 거친 사항은 일반 서면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영상판독 소청 절차
 1. 각 팀 지도자는 득,감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카드를 꺼내어 의사를 표명하여 소청을 신청한다.

2. 영상판독 소청은 당해회전 종료 직후 판독하여 그 결과를 결정한다.
 3. 써든데쓰 회전중에는 경기중이라도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의사를 표명하면, 즉시 판독·결정한다.
- ④ 영상판독 소청의 제기는 각 회전별 1회에 한한다. 단 제기된 소청의 결과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잔여 회전에서 추가적인 소청 제기를 할 수 없다.
- ⑤ 일반소청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청의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15만원을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청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관련된 심판원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점수 계산의 착오나 청·홍 선수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반복한다.
 6. 주심 또는 부심의 타격의 강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유·무 또는 행위의 시간적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반복할 수 없다.
 7. 소청위원회의 경기결과 반복에 의한 해당심판원의 징계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 : 소청위원은 기술전문위원회 임원 또는 태권도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
 3. 구성 절차 : 임원장은 대회 개최일전에 소청위원장 및 소청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⑦ 책임 :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를 통해 판정의 정정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회 중에 소청위원회는 현장상벌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해설

소청위원회는 최소한 5명의 유자격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5명이 상으로 구성할 경우 전체 위원수는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한다.

주

의결 : 의결을 위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청 사유내용을 검토하여 심의 내용을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
2. 필요한 경우 주·부심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청문대상의 결정을 소청위원회에서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판정 기록이나 경기 내용 기록(Video Tape)을 검토한다.
4. 토의가 끝나면 위원단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5. 위원장이 소청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우세판정 카드

경기번호 : _____

주심	1부심	2부심	3부심	4부심
----	-----	-----	-----	-----

청	홍
---	---

심판원 성명 : _____

기록원 집계표

체급/경기번호 : _____

심판명 : _____

청			홍			
경고	- (감점)	+ (득점)	회전	+ (득점)	- (감점)	경고
			1			
			2			
			3			
			합계			
			결과			
			4			

KO	RSC	기권	실격	반칙	경기불능	득감점	연장전	우세

기록원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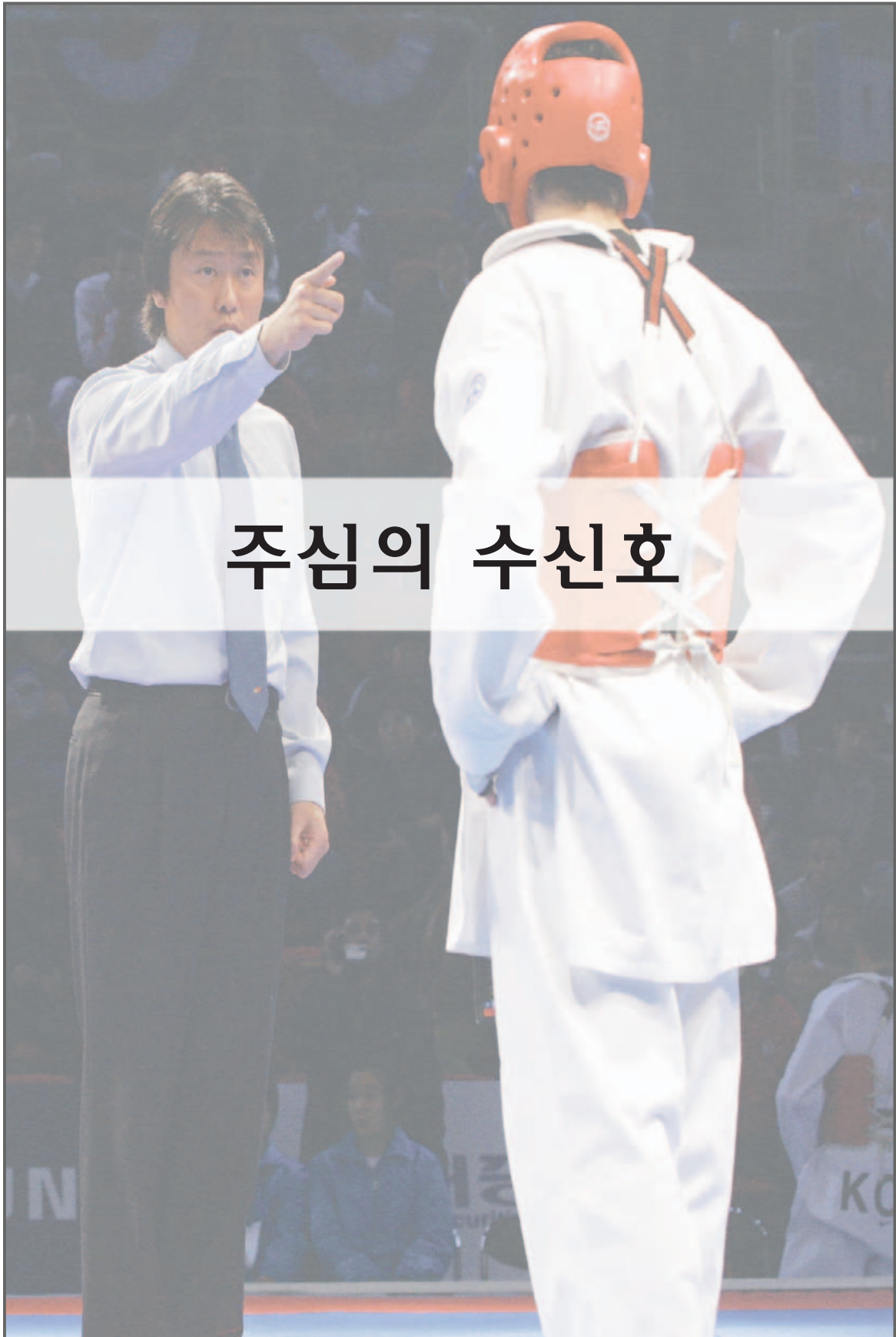
경 기 기 록

코 트

경기번호 : 번 일시 : 년 월 일

체 급 : 급 부 별 : 부

청		홍	
소 속	성 명	성 명	소 속
승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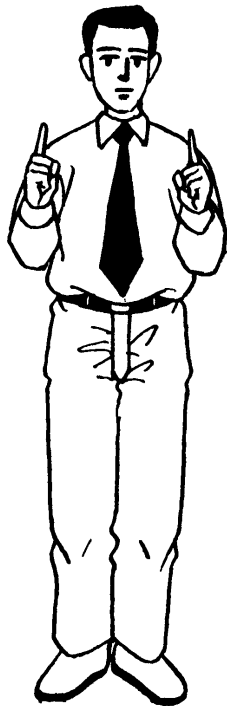


주심의 수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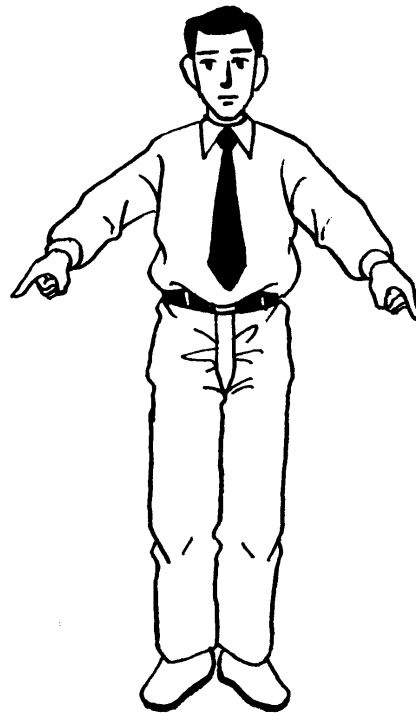
주심 수신호

1. 청, 홍 선수 위치

- 1) 양 주먹을 말아 쥐며 엄지는 중지 위에 놓고 인지를 곧게 편 주먹을 좌, 우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 2) 팔을 뻗으며 먼저 “청”선수 위치를 오른손 인지로 가리킨 후, “홍”선수 위치를 왼손 인지로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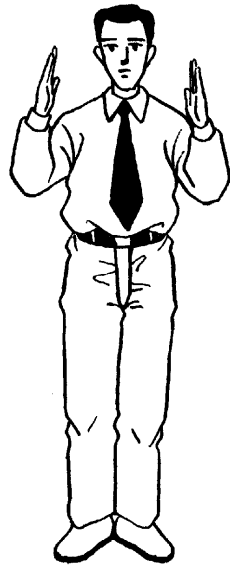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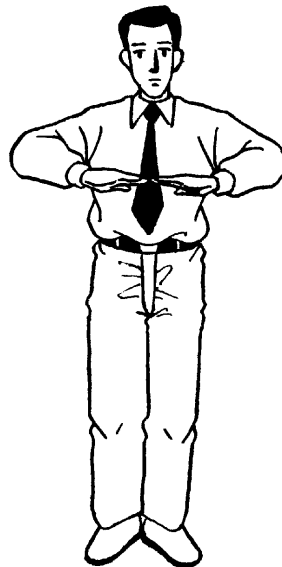
2)

2. 차렷 / 경례

- 1) 양 손바닥이 마주 보도록 하여 양손을 수직으로 세운 후 양쪽 어깨를 중심으로 각각 45도 바깥쪽으로 팔을 벌린 상태에서 손끝을 눈썹높이까지 올리며 “차렷” 구령을 한 다음
- 2) 양 손바닥을 명치앞에 수평이 되도록 동시에 내리면서 “경례” 구령을 한다. 이 때 양손과 명치 사이 그리고 양손끝 사이는 주먹 하나 간격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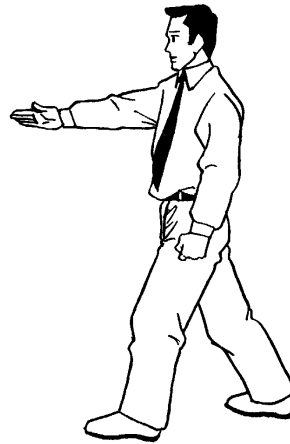
2)

3. 준비

- 1) 오른팔을 어깨를 중심으로 45도 굽혀 오른손을 귀 높이까지 올렸다가
 - 2) 왼앞굽이 자세를 취하면서 오른손을 명치 높이로 뺀 내리며 “준비” 구령을 한다.
- ※ 이때 왼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옆구리 아래로 뺀다.



1)



2)

4. 시작

- 1)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끌어당겨 범서기로 서면서 양 손바닥을 펴고 양 팔을 어깨를 중심으로 각 45도 바깥으로 벌린 후
- 2) 양 팔을 양 손바닥이 마주 보이도록 양 가슴 앞으로 약 25cm 간격으로 재빨리 끌어 당기면서 “시작” 구령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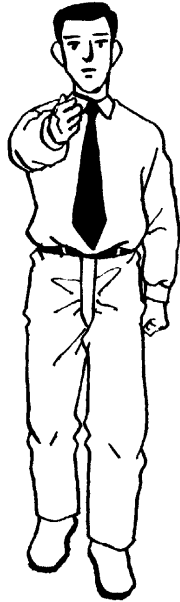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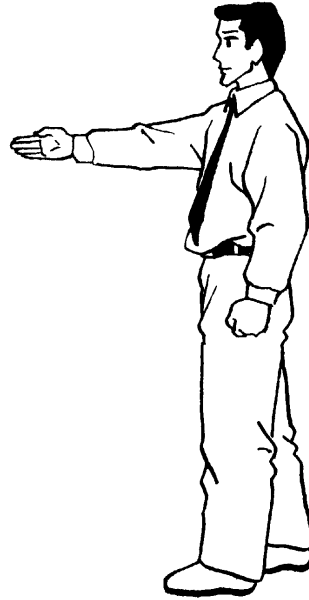
2)

5. “갈려”/ “그만”

원앞서기 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을 명치까지 뻗어 내리며 “갈려”/ “그만” 구령을 한다.



(앞)



(옆)

6. 계속

“갈려” 선언 자세에서 오른손을 오른귀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계속” 구령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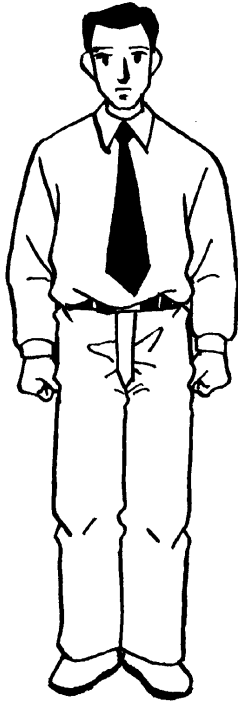


7. 판정 선언

- 1) “청” 선수 승자시 승자쪽을 향한 후
- 2) 오른 주먹을 명치 앞으로 올렸다가
- 3)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펴며 오른팔을 45도 각도 위로 뻗으며 “청승” 선언을 한다.

※ 이때 다른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몸통과 나란히 하여 아래로 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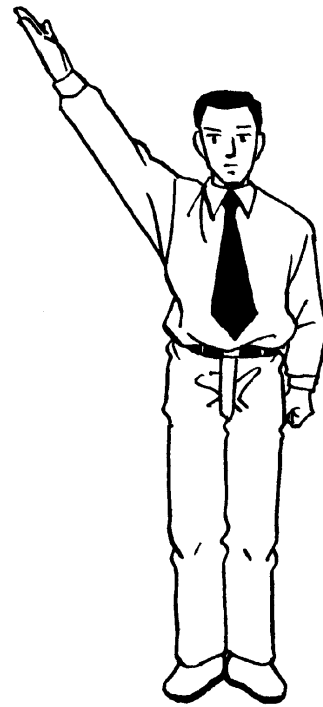
※ “홍” 선수 승자시 같은 요령으로 왼손을 사용, “홍승” 선언을 한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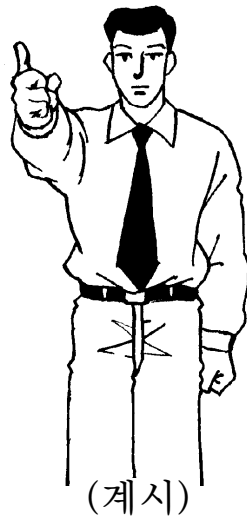
3)

8. 계시

오른팔을 팔의 내각이 135도가 되도록 뺏어내리며 오른손 인지로 기록원석을 가리킨다.

9. “시간”

양손 인지를 인중 높이에서 왼손 인지를 바깥으로 하여 서로 교차시킨다.



10. 계수

주먹을 쥐 상태에서 큰소리로 오른손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1초 간격으로 편다. “다섯”과 “열”에서는 손을 틀어 손바닥이 선수를 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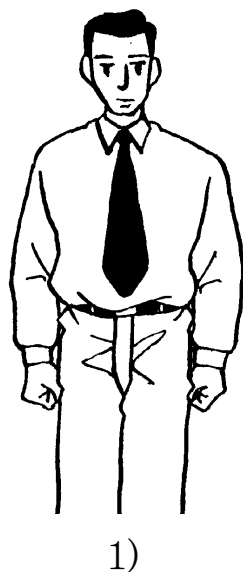
11. “경고” 선언

- 1) 인지를 편 오른손 주먹을 오른쪽 귀 뒤로 가져간다.
- 2) 오른팔을 펴면서 인지로 해당선수의 이마를 가리키며 “경고” 선언한다.



12. “감점” 선언

- 1) 인지를 편 오른손을 오른쪽귀쪽으로 가져간 다음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 차렷자세에서
- 2) 오른손 인지를 수직으로 곧게 뻗어올리며 “감점” 선언한다.



13. 득점 무효 선언

경기규칙 제12조 5항과 관련, 주심은 “갈려” 선언을 한 후 즉시 득점 무효를 선언한다.

- 1) “차렷” 자세에서 오른손바닥을 앞을 향해 이마 앞 20cm 위치까지 올린 후
 - 2), 3) 오른손바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깨넓이 만큼 2회 흔들어 무효를 나타내되 몸은 자연스럽게 해당 선수를 향한다.
- ※ 그 후에는 기록석을 향해 “시간”을 지시한 후 금지행위를 한 선수에게 벌칙선언을 해야 하며, 벌칙선언을 한 후 “계속” 구령을 하는 시점에서 부터 경기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